

# 2026년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

## [특화형]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 공고

반려동물 산업의 우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·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용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「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4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# I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6년 2월 24일(화)~ 3월 16일(월), 15시까지
- 접수방법 :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 신청(gsp.or.kr)
- 모집분야
  - 프리미엄 사료, 헬스/케어용품, 미용/패션용품, ICT 결합상품, 가구, 기타 기술창업 분야 등
  - ※ 애견삼, 단순 도소매,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은 지원 제외
- 모집규모 : 총20명(예비창업자 10명, 초기창업자 10명)
- 지원내용 :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~ 11월 30일

### II 지원내용

- 사업화 지원금
  - 지원금액 : 예비창업자 최대 20백만원, 초기창업자 최대 30백만원
  - 지원비율 : 공급가액 기준 80% 이내 지원, 자부담 20% 이상
  -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

구분	예비창업자(10명)	초기창업자(10명)
A	20백만원(1명)	30백만원(2명)
B	10백만원(9명)	20백만원(8명)
비고	※ IR데모데이 우수참여자(3명) 추가지원 ☞ 대상 5백만원, 최우수상 3백만원, 우수상 2백만원	

### ○ 지원비목(사무편람 참조)

재료비, 외주용역비,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, 인건비, 전시회 참가비(박람회), 시험·인증비, 법률자문비, 기자재 임차비, 사무실 임차료, 광고선전비, 세무회계기장비

### □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

- 참여자 성장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연계 지원
  - 주요내용 교육, 기업진단, 컨설팅, IR 데모데이, 상담회 등
  - 참여·선배·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추진
- ※ 「스타트업 리더스 서밋」 참가

## III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구분	세부조건
예비창업자	○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·법인)이 없는 자 - 신청가능 기준 : 2026년 2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
초기창업자	○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경기도 내 3년 이내 창업기업 -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(개인·법인 대표자) - 신청가능 업력 : 2023년 2월 24일~ 2026년 2월 23일 ·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·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(본점·본사 기준) 상 회사성립연월일

#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제재 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및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
  -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사업 분류 기준 적용
  - 시설·공간·보육, 창업교육, 멘토링·컨설팅, 행사·네트워크 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
- 「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발굴 및 창업지원」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(수혜) 받았거나 중도 포기한 자

## 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지원사업 사무편람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 
초기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을 경기도에 유지하여야 함

## IV 접수방법

### □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6년 2월 24일(화)~ 3월 16일(월), 15시까지
- 접수방법 :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 신청(gsp.or.kr)
  -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회원가입을 실시
  - 온라인 입력 후 파일(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) 첨부
  -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제출 완료 시 접수 인정
  -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(그 외 양식 평가대상에서 제외)

### □ 제출서류

#### ○ 신청(접수)시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<span style="color: blue;">☞ 반드시 참여자(대표) 본인 명의로 신청</span></li> <li>○ 개인·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</li> <li>○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(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)</li> </ul> </li> <li>○ 예비창업자 : 사실증명원(모집공고일 기준)</li> <li>○ 초기창업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, 기업의 범위반 사실 여부 약약서,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(본점 · 본사 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

○ 신청(접수)시 추가서류

구분	제출서류
가점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(신분증) 1점</li> <li>- 2025년 「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」 상장 5점</li> <li>-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지정서 또는 인증서 1점</li> <li>☞ 사회적기업 인증서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, 마을기업 지정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, 소셜벤처 판별서 등을 제출</li> <li>※ 가점 최대 5점</li> </ul>

○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※ 제출 방법 별도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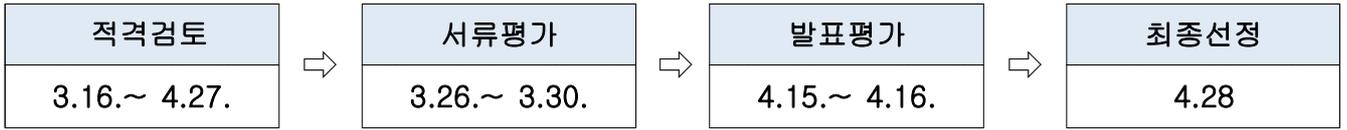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</li> <li>- 예비창업자 : 신청자 개인명의(주민등록번호) 증명서 제출</li> <li>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업자용 증명서 제출</li> <li>- 법인사업자 : 법인명으로 발급된 법인용 증명서를 제출</li> </ul>
초기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창업기업확인서</li> <li>☞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</li> </ul>

□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- 경기도 및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 (사업화지원)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
-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자동 취소 및 관련 법에 따른 고발·보조금 환수 조치
-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·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지원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※ 접수는 15:00 정각에 종료(15:01 접수불가)
- 온라인 신청 이후 「참여신청」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
- ※ My space → 활동이력 → 지원사업 에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가능

## V 선정절차

### □ 평가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신청자(기업)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○ 적격검토

- 사업계획서, 사실·사업자 등록증명원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
- 가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반영
-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(국세 및 지방세, 창업기업확인서 등)
-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와 법위반 사실여부 조회
- 초기창업자 대상 법위반 사실 여부 조회 실시(경기도 의뢰)

○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 세부항목별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

○ 발표평가 : 사업계획서(과제) 발표 및 질의응답(15분 내)

### 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이템 개발 동기(문제인식) 및 해결방안(필요성)</li> <li>- 목표시장 분석 및 타켓의 설정의 적절성</li> </ul>
실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개발(고도화) 가능성</li> <li>- 경쟁력 확보 방안, 기술우위 수준</li> <li>- 아이템 관련 법규준수 및 인허가 준비도</li> </ul>
성장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</li> <li>- 수익모델의 지속가능 전략 및 자금조달 전략,</li> <li>- 협약기간내 목표달성 전략</li> <li>- 반려산업 발전 기여 및 사회문제 해결 정도</li> </ul>
팀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한 기술역량 및 노하우</li> <li>- 보유 네트워크</li> </ul>

□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

## VI 기타 안내

### □ 추진일정



### □ 문의처
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([www.gsp.or.kr](http://www.gsp.or.kr))  
(회원가입/시스템) ☎ 070-5038-2215 / [gsp@gbsa.or.kr](mailto:gsp@gbsa.or.kr)
- 지원사업(일반형) 문의  
(신청자격 등) ☎ 031-8039-7108, 8039-7105 / [gp@gbpet.or.kr](mailto:gp@gbpet.or.kr)

### < 제재 조치 >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 운영규정」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 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)
  -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

##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
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중인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자
  - \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가능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경기도,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자
-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,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
  - \*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 지원, 멘토링·컨설팅 지원, 행사·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, 중단(중단처분, 중도포기자) 포함
  - ※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사업화 분류 기준 적용**
- 기존 「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발굴 및 창업지원」 사업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도 포기한 자

▪ 지원제외 업종

구분	제외 대상 업종	코드번호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<b>중소벤처기업부령</b> 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기준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

##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

(제정 2010.10.21. 규정 제 160호)

### 제12조(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)

-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·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,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
  - 2.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  - 3.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
  - 4.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5. 위법·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- 1.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이상인 경우
  - 2.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
  - 3.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
  - 4. 그 밖에 위법·부당행위의 내용, 횡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.
-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부당지원수혜자 제재)

-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.
  - 1.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금액)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
  - 2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
    - 가.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이상인 경우
    - 나.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
    - 다.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
    - 라. 그 밖에 행위의 내용, 횡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.

경기도 고시 제2026-8호

##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8.

경 기 도 지 사

1. **추진목적**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**적용대상**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
3. **적용사업** :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 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
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
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- 4) (자금·융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
4. **위반사실 적용법률**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가. 적용법률

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
나.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범위반 행위(붙임 1)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

다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
**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**

- 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- 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
**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**

-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- 나.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4)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
  - 단,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,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- 다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**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**

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-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**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**

-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- 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
**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(서식2)**

**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**

**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, -2995)**

- 붙임
- 1. (유예대상 목록) 47개 법위반 행위목록
  - 2. (서식1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- 3. (서식2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
  - 4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
  - 5. (서식4)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

(붙임 1)

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1	공정거래법	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
2	공정거래법	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
3	표시광고법	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
4	근로기준법	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
5	근로기준법	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
6	근로기준법	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
7	근로기준법	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
8	근로기준법	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(계약서류 미보존)
9	근로기준법	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
10	근로기준법	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
11	근로기준법	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
12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
13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
14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예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
15	산업안전보건법	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
16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
17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
18	산업안전보건법	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
19	산업안전보건법	• 휴게시설 미설치
20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
21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
22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
23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
24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
25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
26	산업안전보건법	• 불성실 보고
27	폐기물관리법	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
28	폐기물관리법	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
29	폐기물관리법	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
30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
31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
32	폐기물관리법	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
33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
34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35	소음진동관리법	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
36	소음진동관리법	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
37	소음진동관리법	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
38	소음진동관리법	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영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
39	소음진동관리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
40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
41	물환경보전법	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
42	물환경보전법	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
43	물환경보전법	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
44	물환경보전법	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
45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
46	물환경보전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
47	지방세기본법	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